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553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4272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5530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 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10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5. 23. 접수 제10157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현재 법인명: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3. 접수 제15603호로 2009.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오빠인 F과 그 아들인 G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5. 23. 피고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기로부터 전후 1년간(2007. 5. 23.부터 2009. 5. 23.까지) C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C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피고가 차용증이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D 또는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F의 매부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룬다.

나. 살피건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C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외에 C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이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 명의의 인감증명 미발급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F과 C의 관계, 피고와 F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차용증 또는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원경

별지